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최인상

전화 053-570-4420 / 팩스 053-570-4242

보도자료

2022. 4. 21.(목)

제 목

‘데이팅 어플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조직 수사결과 -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리질 수사사례 (17명 기소, 3명 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2022. 4. 20.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어제(4. 2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이준엽)은 ‘데이팅 어플’로 약 3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만남 또는 교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구매금액 합계 10억 4,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편취하고 1억 6,800만원 상당을 교제비 등으로 편취한 신종 사기 범죄집단을 적발,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한편,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이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하며 다른 공범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범행 체계를 갖춘 사실을 확인,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죄(형법 제114조)로 의율하였음

● 피해금액 400만원대 소액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학적 기법, 계좌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직접 전개하여 신종 사기 범죄집단의 광범위한 범행 전모를 규명함. 이른바 ‘검수완박’이 되면 밝힐 수 없었을 수사사례임

1 피고인 및 처분내용

순번	피고인	지위·역할	죄명	처분
1	A (남성)	사장 ▶ 사무실 개설 컴퓨터 등 시설 제공 ▶ 직원 고용 및 관리 어플 계정 가입 ▶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모집·관리 ▶ 직원들에 대한 범행방법 교육 ▶ 직원들의 수익 중 '자릿세' 징수	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22. 4. 20. 구속 기소
2	B (남성)			
3	C (남성)	중간관리책 ▶ 직원들을 사장에게 소개하여 고용 ▶ 직원 및 사무실 관리	사기, 범죄집단 가입·활동	
4	D (여성)	계좌모집책 겸 직원 ▶ 여성 명의로 계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 모집	사기,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	'22. 4. 20. 불구속 기소
5	E (남성) 등 13명	직원 ▶ 어플을 이용하여 직접 남성 가입자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수익 취득	사기, 범죄집단 가입·활동	

2 공소사실 요지

-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의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3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① 어플 대화에 소요되는 포인트 3억 3,300만개 상당(구매금액 합계 10억 4,000만원 상당)과 ② 카카오톡 등 1:1 대화를 통해 교제비 등 합계 1억 6,80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사기]
 - ※ 위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임
- 주범 A, B는 사무실을 개설, '사장' 역할을 하며 14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하고 범행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3

수사 경과

- '21. 12. 1. 경찰, 사건송치(천안지청) → '22. 1. 4. 당청 이송
▶ 송치된 범죄사실 : D가 어플 이용자인 남성 피해자 1명으로부터 교제비 등 417만원 편취
- '22. 1. 26. 검찰, D 조사
※ 불상의 남성들이 범행수익을 인출하는 CCTV 장면을 확인, D가 공범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휴대전화 압수(디지털포렌식)
☞ D의 범행이 아님에도 주범 A, B의 증용에 따라 D가 경찰에서 허위자백한 사실 확인
- ~ '22. 3. 23. 검찰, 범죄수익계좌 추적 및 어플 운영업체 압수수색
- ~ '22. 4. 5. 검찰, 주범('사장' 및 '중간관리책') 3명, 직원 1명 입건·체포
→ 4. 7. 주범 3명 구속
- ~ '22. 4. 19. 검찰, 직원 12명 추가 입건
- '22. 4. 20. 주범 3명 구속 기소, 직원 등 14명 불구속 기소

4

'검수완박'이 되면 실체규명이 곤란하였을 사례

- 경찰은 단순 사기(피해금액 약 400만원 / 피해자·피의자 각 1명)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직접수사로 피해자 3만여 명으로부터 함께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데이팅 어플' 이용 수법의 사기 범죄집단(총 21명)을 적발하였음
-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면 범행 전모를 규명하지 못하고 허위자백에 따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분되었을 사례임
- 공범들 간 허위진술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보완수사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주범들이 수사대상임을 인지하여 증거인멸 등 범행 전모를 은폐할 우려가 높아 직접수사가 필요하였음
※ 휴대폰·업체 압수수색 등 적절한 영장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범들의 허위진술 증용, 송치된 피의자의 허위자백 및 범행수법·피해규모 등을 밝히고 증거 일체 확보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